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94
----------	------

2021년 9월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태호 의원

나. 발의일자 : 2021년 08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08월 18일

라. 상정결과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9월 6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태호 의원)

가. 제안이유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19조에서 태권도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기원은 시설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 주무부서의 혼재로 태권도

진흥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태권도 종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태권도 진흥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기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포함한 태권도 활성화 지원에 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시장의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협력방안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등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기 타 :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정욱)

가. 제정의 필요성

- 정부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을 별도로 제정(2007.12.21.)하고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는 조문을 신설(2018.4.17.)함.

또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를 선정하여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등 태권도 재도약을 위한 내외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동 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인 태권도법은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¹⁾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 「태권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1) 이를 근거로 태권도 진흥에 관하여 태권도공원이 조성된(2014. 4.) 전라북도만이 별도의 조례를 제정·시행(2015.12.) 중이며 그밖에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서구는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중임.

- 따라서 서울시 차원의 태권도 종목 진흥사업과 함께 서울시에 위치한 국기원의 관광명소화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필요성이 인정되며,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체육진흥에 관한 자치사무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 또한 인정됨.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제정조례안은 「태권도법」,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태권도 종목 육성·진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됨.
- **안 제1조(목적)**에서 서울특별시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와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단련을 도모하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는 「태권도법」 제2조에서 사용한 용어를 준용하여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함.

관련 법령

- 「태권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2. “태권도시설”이란 태권도 수련·경기·연구·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태권도단체”란 태권도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안 제3조(책무)**에서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 등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태권도법」 제8조의 태권도단체·태권도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한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음.

관련 법령

- 「태권도법」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이 되는 태권도시설로 역삼문화공원 내 위치한 국기원이 대표적임. 국기원 건물은 '74년 준공 후 기부채납되어 현재 서울시 소유이고 관리사무는 강남구청장에게 위임된 상태임(재산관리관: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위임관리관: 강남구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그간 국기원 시설 보수지원 요청에 대해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자치구 사무임을 이유로 미지원 해왔으며(붙임 2 참고) 리모델링 사업은 체육 관련 사무와 밀접하므로 관련 부서(관광체육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옴.

그러나 관광체육국은 국기원은 공원 내 시설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적용을 받아 각종 계획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이 수반되어야 하고 재산관리관

이 푸른도시국이므로 시설 노후화 관련 보수비용 지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음.

다만 현행 「태권도법」 제8조를 근거로 민법상 특수법인인 국기원을 태권도시설이 아닌 태권도단체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바, 관련 내용을 시 조례의 명문화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4조(계획의 수립)**에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 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제1항에서 시장이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우수 선수·지도자 및 태권도팀의 육성·지원, 태권도 관련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시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태권도단체 및 국기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 제6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에서 시장이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선수의 조기 발굴·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함.

현재 전문체육에 대한 육성·지원에 대해 서울시(일반)와 서울시교육청(학생)으로 정책과 예산이 이원화되어 있어 학생선수가 실업팀 등 전문체육 선수로 성장하는데 상당부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옴.

향후 태권도 종목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업하여 전 종목에 걸쳐 효율적인 학생선수 육성과 학생체육의 저변확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민 생활체육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임.

- 안 제7조(홍보 등)에서 태권도 보급·진흥 확대를 위한 홍보, 행사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표창)에서 태권도 진흥 및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라. 종합검토의견

- 태권도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 선정 및 국기(國技) 지정을 계기로 2022년까지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내·외 수련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한국 문화의 대표 콘텐츠로 부상함에도 불구하고 성장 정체와 리더십 위기에 여러 차례 직면하였음.

이러한 대내·외 환경에서 「태권도법」,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태권도 종목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의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태권도 종목에 대한 정책 완성도를 높여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유례없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권도 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고 태권도 종주국으로써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9.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김태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94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1일
발 의 자 : 김태호 의원(1명)
찬 성 자 :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안광석, 오한아, 유 용,
이종환, 최영주, 황규복
의원(9명)

1. 제안이유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9조에서 태권도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기원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태권도 진흥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 태권도 진흥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에 대한 지원 및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서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태권도단체·태권도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제3항)
- 나. 시장의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다.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협력방안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단련을 도모하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민 누구나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내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3.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

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태권도단체 및 이해관계자, 시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태권도 우수 선수·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지원

2. 태권도 관련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시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

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

5.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6.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관내 태권도시설 명소화

7. 그 밖에 시장이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태권도단체 및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국기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등) ① 시장은 지역 행사 연계, 온·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 또는 행사를 하는 태권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태권도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3-(04)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문서번호

2021080600000008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김태호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이혜린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8.06

회신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제7조제1항, 2항, 3항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실시하고 태권도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제5조제1항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으나, 서울시 관광체육국에서 기추진 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서울시 관광체육국 기추진 사업 2021년 예산 2,745,164천원(붙임 참고)

※제3조제3항에서 태권도단체·태권도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6조에서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협력 방안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이는 비용을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5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50,000천원으로 연평균 3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태권도의 날 홍보 및 행사 비용은 서울시 관광체육국 유사사업을 참조하여 연간 30,000천원 비용 산출

※서울시 관광체육국 스포츠의 날 홍보 및 운영비 30,000천원

- 태권도의 날 홍보 및 행사는 태권도 단체가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 추계기간 동안 태권도의 날 행사는 연1회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

-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50,000천원 (연평균 30,000천원)
- 총 비용 = 태권도의 날 홍보 및 행사비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	-	-	-	-	-	-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제7조제2항 (태권도의 날 홍보 및 행사비용)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소계(b)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총비용(b-a)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주1: 태권도의 날 행사비용은 서울시 관광체육국 유사사업의 행사비용 준용

- 태권도의 날 홍보 및 행사비용 ≙ 150,000천원
= 30,000천원 × 5년

※참고) 서울시 관광체육국 스포츠의 날 홍보 및 운영비를 참조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주 무 관 이해린
 ☎ 02-2180-7955
 e-mail : lovelyynn91@seoul.go.kr